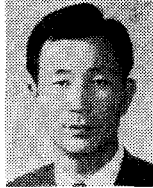


意匠登錄出願·圖面作成要領

<上>



鄭 松 培
<辨 理 士>

① 出願書 作成要領

- (1) 考案者欄에는 考案者の 姓名·住民登錄番號·住所를 記載한다.
- (2) 出願人欄에는 出願人の 姓名·주민등록번호·주소나 營業所를 기재한다. 다만, 출원인이 法人인 경우에는 姓名欄에 法人의 名칭과 그 代

<例 示>

의 장 등 록 출 원 서				
고 안 자	성 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120406~7890123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02		
출 원 인	성 명	정 선 달	주민등록번호	000802~5798721
	주 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13		
대 리 인	성 명	박 문 수	주민등록번호	000106~5786723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4가 56		
의장을 표현할 물품의 명칭		술		
의장 고안의 요지		형상과 모양		
등록청구의 범위		도면 및 설명에서 표현한 것과 같은 술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		
의장법 시행령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원 합니다.				
1976. 10. 18.				
출원인(대리인) 박 문 수 ①				
특허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출원서 부분 1통				
2. 도 면 4통				

表者의 姓名을 기재하며 住所欄에는 주소나 營業所를 기재한다(법인인 경우에는 住民登錄番號는 기재하지 않는다).

考案者와 출원인이 同一人인 경우에는 考案者欄에 출원인과 동일이라고 기재하여도 無妨하다.

(3) 出願代理人欄에는 意匠登錄出願人の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限하여 기재하며 대리인의 姓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다.

(4) 意匠을 表現할 物品의 名稱欄에는 意匠法施行規則에서 定한 物品類別區分內에서 1個의 物品名을 기재한다. 다만 物품류별 구분내에 없는 物품은 物품류별 구분에 該當하는 物품의 普通名稱을 標準말로 기재하되 다음 例와 같이 기재한다.

<例 示>

① 物品名은 實際로 使用되는 具體的인 名칭을 기재하는 것으로서 「鉛筆」「安全面刀날」등이라 기재하며 「文房具」「理髮用具」등의 抽象的인 名칭이나 또는 지나치게 細分하여 「六角鉛筆」「○○式 安全面刀날」이라는 名칭을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② 物품명의 語頭에 形容詞를 붙여서는 안 된다(例“꽃模模의 연필”).

③ 慣習上 一定한 狀態로 使用하는 습해진 物품의 名칭은 「한쪽」「한

결례] 「1組의」 「한벌의」 등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양말」 또는 「作業服」으로 기재한다.

④ 1物品으로서 2以上の機能을 가진 것은 主機能의 명칭을 뒤로 하고 副次的 機能의 명칭이 앞에 오도록 기재한다(例 “재떨이가 붙은 라이터” 또는 “時計가 달린 목거리” 등).

⑤ 물품의 附屬品인 경우에는 어떤 물품의 부속품인가를 알아볼 수 있게 기재한다(예 “텔레비전 受像機用裝飾板” 또는 “時計用針”).

⑥ 完成品으로서 獨占하여 2이상의 用途로 사용되는 것은 사용될 물품명을 기재한다.

(5) 意匠考案의 要旨에는 의장고안의 支配的인 요지만을 기재한다.

(6) 登錄請求의 範圍欄에는 意匠登錄의 權利範圍를 다음의 예시와 같이 기재한다.

(예 시)

- ①

圖 寫 本 實	面 眞 本 物
------------------	------------------

 및 설명에서 表現한 것과 같은 ○○의 形狀 및 模樣의 結合
- ②

도 사 本 사	면 眞 本 眞
------------------	------------------

 및 설명에서 表現한 것과 같은 ○○의 형상 모양 및 色彩의 結合 (물품의 명칭)

다만 의장을 표현한 물품으로서 모양만이 四方으로 反復 連續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前記 例示에서 「형성」만을 削除한 其他 事項을 기재한다.

(7) 提出人은 출원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捺印한다. 다만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만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8) 具備書類는 法令이나 其他 書式에서 정한 서류를 添付한다.

② 圖面作成要領

1. 添付圖面

① 도면의 1通은 “드레싱페이퍼”로 하고 3통은 靑寫眞으로 하되 의장고안의 도형은 圖面 2枚以內에서 圖示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② 도면은 쉽게 변색하지 아니하는 繪具로 鮮明하게 作成하고 도면의 輪廓線은 濃墨으로 도시하여야 하며 연필·크레용·볼펜을 사용하거나 複寫紙로 복사한 것 또는 騰寫版으로 등사한 것은 안된다.

③ 도면은 4通全部가 一致되게 하여야 하며 “스케치식” 圖示는 안된다.

④ 도형의 內部에는 中心線, 基線, 水平線, 陰線을 表示하는 細線이나 濃淡 또는 의장고안의 內容을 설명하기 위한 指示線·符號·文字 및 其

他意匠을 構成하지 아니하는 線, 符號 또는 문자를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⑤ 도면의 各 圖形의 上部는 그 該當圖形의 명칭을 기재한다.

(1) 立體를 表現하는 도면은 正投象圖法에 의하여 各 圖面을 同一縮尺으로 하여 6面圖를 하나의 意匠圖로 하여 작성한다.

① 6면도는 正面圖, 背面圖, 左側面圖, 右側面圖, 平面圖 및 底面圖를 말한다.

② 물품의 정면을 表現한 것이 정면도이고 그 反對面이 배면도이며 ③ 물품의 정면을 向하여 그 좌측면을 表現한 것이 좌측면도이고 그 반대면이 우측면도이며 ④ 물품의 上面을 表現한 것이 평면도이고 그 반대면이 저면도이다.

(2) 6面圖中 다음의 경우에는 1面以上の 도형을 省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도시한 도형의 명칭을 기재한 좌측에 괄호를 하고 그 사실을 기재한다.

① 정면도와 배면도가 동일 또는 對稱인 경우에는 배면도를 생략한다.

② 좌측면도와 우측면도가 동일 또는 對稱인 경우에는 그 一方의 측면도를 생략한다.

③ 평면도와 저면도가 동일 또는 對稱인 경우에는 저면도를 생략한다.

(3) 平面的인 물품을 표현하는 도면은 정투상 도법에 의하여 동일축척에 의하여 표면도와 이면도를 다음의 例示와 같이 도시하며 2面圖를 하나의 意匠圖로 한다.

① 표면도 및 이면도를 도시하되 표면도와 이면도가 동일 또는 對稱이거나 또는 이면만이 無模樣인 경우에는 이면도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도시한 도형의 명칭을 기재한 우측에 괄호를 하여 그 사실을 기재한다.

② 평면적인 물품은 다음의 예시와 같다.

織物地·비닐地·타올 및 손수건·보자기·包裝紙 및 紙牌·賞狀·毛布 등

③ 모양이 사방으로 反復되어 連續하는 것을 표현하는 도형은 그 반복연속되는 상태를 알 수 있도록 도시한다. 이 경우에는 의장의 說明欄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2. 其他의 圖面

意匠考案을 표현함에 있어 도형만으로서 그 의장고안을 充分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展開圖, 斷面圖, 切斷部斷面圖, 擴大圖, 斜視圖 및 其他 必要한 參考圖를 添加할 수 있다.

(계 속)